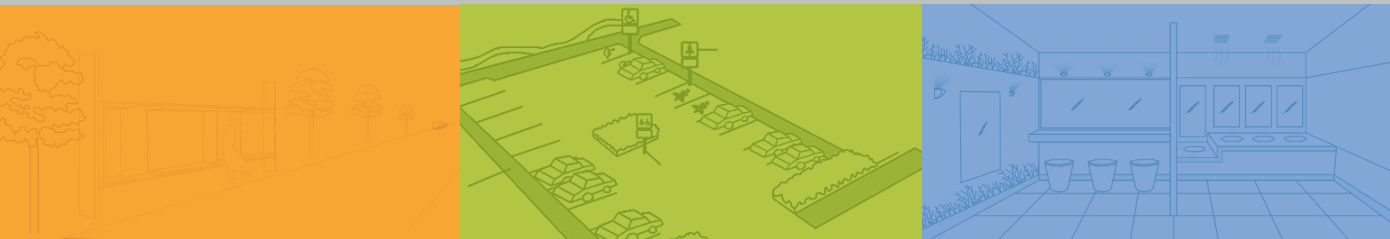




Women Friendly Seoul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2009. 4.

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1. 여성이 행복한 길

기본방향 및 키워드

여행길 가이드라인 2

여행길 평가표 3

여행길 평가기준표 5

여행길 매뉴얼(세부규정) 6

2.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여행주차장 가이드라인 24

여행주차장 평가표 25

여행주차장 평가기준표 27

여행주차장 매뉴얼(세부규정) 28

*별첨(주차장 용어의 정의) 44

3.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여행화장실 가이드라인 46

여행화장실 평가표 47

여행화장실 평가기준표 49

여행화장실 매뉴얼(세부규정) 50

관련법규 66

기본방향 및 키워드

- | 기본방향 |
-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으로 여성성이 반영되는 고품질의 공공성 추구
 - 여성의 도시환경 만족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여행도시의 정착

- | 여행키워드 |
- C.O.S.Y.女幸**
여행의 인지성과 여성성에 관한 테마

편의
Convenienc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도시

- 여성의 편의성 확보
- 사람 중심의 도시 시설물 정비를 권장
- 필요공간의 효율성과 질서 확립

배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도시

- 이동약자를 생각하는 도시환경 조성
- 공공 교류기능의 확대
- 도시기능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화

안전
Safety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도시

- 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와 환경의 안정성 확보
- 편의에 따른 위해 및 장애 요소 제거
- 범죄의 예방과 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쾌적
Amenity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도시

- 경관과 시설요소들의 조화로운 구성
- 환경 친화적인 도시 조성
-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

1

여성이 행복한 길

여행길 가이드라인

여행길 평가표

여행길 평가기준표

여행길 매뉴얼(세부규정)



여성이 행복한 길

구분	가이드라인	등급
1. 편의 Convenienc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도시	1. 여성친화보행로 설치 2. 여성친화교차로 계획 3. 여성 편의시설 확충 4. 보행로(여성친화보행로 포함) 개보수에 지역 의견 반영	필수/선택 선택 선택 권고
2. 배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도시	1. 보행 지원 시설 설치 2. 보행로 시설물의 적절한 배치 3. 보행로와 대중교통의 연계성 확보 4. 여성참여 여행길 만들기	필수/선택 필수 선택 권고
3. 안전 Safety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도시	1. 야간 적정조도 유지 2.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로 3. 여성안전 택시승강장 설치 4. 범죄 예방 CCTV 설치	필수/선택 선택 선택 필수
4. 쾌적 Amenity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도시	1. 쾌적한 보행로 및 가로변 디자인 2. 친환경적인 가로변 조성 3. 건축후퇴선 내 공공활용 4. 테마설정형 가로 조성	선택 선택 선택 권고

여성이 행복한 길 평가표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O	X	적용등급	비고(평가기준)
편의	1.1 여성친화보행로설치	여성친화보행로의 적정 유효폭 확보 및 보행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감재 틈새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유효폭 1.5m • 시설물 및 장애물 침해불가 • 틈새 2mm이하의 균일한 바닥재
	2.1 보행 지원시설 설치	보행로 주변에 쉼터제공 및 쾌적성 확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위치에 쾌적한 쉼터공간 (벤치등) 설치
배려	2.2 보행로 시설물의 적절한 배치	보행로 주변의 시야확보를 고려한 시설물과 조경배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설물 집중배치 • 시각차폐요소가 없는 개방적인 공간감 조성
	3.1 야간 적정조도 유지	보행로와 교차로의 적정조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와 분리된 보행조명 설치 • 최소 30lux이상으로 지역조건 고려
안전	3.4 범죄예방 CCTV 설치	적정위치에 범죄예방 CCTV 설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안전 택시승강장에 연계 권장

● 필수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X 일 때 인증불가)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평가기준)
편의	1.1 여성친화보행로 설치	주요시설과 여성친화보행로의 연계성				선택	
		도로단차, 턱의 장애 해소					
	1.2 여성친화교차로 계획	보행자중심의 짧은 동선 횡단보도 확보				선택	교차횡단보도 등 적용 '상'
		잔여 횡단시간표시 확대 설치					
1.3 여성 편의시설 확충	지역성을 반영한 여성 편의시설 및 생활정보 전달시스템 마련				선택	다양한 편의 프로그램 제공 여부	
1.4 보행로 (여성친화보행로포함) 개보수에 지역 의견 반영	보행로 개보수 공사시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수립				권고		
배려	2.1 보행 지원시설 설치	안내판의 적정성 및 명료도와 디자인				선택	필수적인 표지판을 적절하게 설치여부
	2.3 보행로와 대중교통의 연계성 확보	지하철 입구와 보행로의 원활한 연결				선택	에스컬레이터 등 편안한 수직동선연결
		지하철역 주변에 택시승강장 설치					지하철일부와 연계된 택시승강장
2.4 여성참여 여행길 만들기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 여성의견 수렴 및 여성 모니터링제 도입				권고		
안전	3.1 야간 적정조도 유지	횡단보도용 별도 조명설치				선택	사고방지를 위한 횡단보도 조명
	3.2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로	안전한 자동차 진입역제용 말뚝(블라드) 설치				선택	주야 식별가능 및 탄성소재 안전블라드
		점검구 통합활용 또는 맨홀 / 배수구의 효과적 설치					점검구 개소축소 및 보행로 장애해소
3.3 여성안전	여성안전 택시승강장 설치				선택	안전 택시승강장 설치	
쾌적	4.1 쾌적한 보행로 및 가로변 디자인	전선지중화 실시 및 설비 통합화				선택	
		미적이고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마감과 시설물					도로마감과 시설물의 디자인성 판단
		개방적인 도시경계 마련					담장허물기 등의 공공공간 조성시도
		탈획일화 한 가로변 디자인					자유롭고 독창적인 가로변공간 조성
	4.2 친환경적인 가로변 조성	미적측면을 고려한 쾌적한 녹지대 조성 및 친환경소재 활용				선택	조경을 이용한 쾌적도
	4.3 건축후퇴선 내 공공활용	미관지구 건축후퇴선내 공지활용				선택	공지에 보행공간 확대나 편의시설제공
4.4 테마설정형 가로 조성	거리의 지역성 및 문화적 정서 보유				권고		
	보행가로특성의 활성화(차량 통제 거리등)						

● 평가표 중에 진한 글씨체 : 필요성 높은 항목

여성이 행복한 길 평가기준표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편의	1.1 여성친화보행로 설치	주요시설과 여성친화보행로의 연계성	충분히 연계	주요시설연계	고려없음	선택
		도로단차, 턱의 장애 해소	장애완전해소	대체로 해소	고려부족	
	1.2 여성친화교차로 계획	보행자중심의 짧은 동선 횡단보도 확보	교차횡단보도 등 적용	횡단보도중심	고려없음	선택
		잔여 횡단시간표시 확대 설치	모두설치	주요부분설치	고려없음	
	1.3 여성 편의시설 확충	지역성을 반영한 여성 편의시설 및 생활정보 전달시스템 마련	다양한 편의시설이 충실	시도와 고려있음	고려없음	선택
1.4 보행로 (여성친화보행로포함) 개보수에 지역 의견 반영	보행로 개보수 공사시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수립	시행프로그램 가동	시행계획수립	고려없음	권고	
배려	2.1 보행 지원시설 설치	안내판의 적정성 및 명료도와 디자인	적정하고 충실함	디자인 시도있음	고려없음	선택
	2.3 보행로와 대중교통의 연계성 확보	지하철 입구와 보행로의 원활한 연결	에스컬레이터 등과 원활히 연결	보행로와 지하철 입구의 동선 연결	고려없음	선택
		지하철역 주변에 택시승강장 설치	지하철출입구와 연결성 확보	택시승강장 설치	고려없음	
	2.4 여성참여 여행길 만들기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 여성의견 수렴 및 여성 모니터링제 도입	여성의견수렴기구보유	여성의견수렴계획 수립	고려없음	권고
안전	3.1 야간 적정조도 유지	횡단보도용 별도 조명설치	모든 횡단보도 사고방지용조명	사고방지용조명 일부설치	고려없음	선택
	3.2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로	안전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설치	탄성소재볼라드	주야 식별가능 안전볼라드	고려없음	선택
		점검구 통합활용 또는 맨홀 / 배수구의 효과적 설치	점검구통합설치 및 보행로외에 설치	일부 통합시도	고려없음	선택
	3.3 여성안전	여성안전 택시승강장 설치	규정을 만족하는 택시승강장	택시승강장설치	없음	선택
쾌적	4.1 쾌적한 보행로 및 가로변 디자인	전선지중화 실시 및 설비 통합화	지중화실시	지중화실시	고려없음	선택
		미적이고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마감과 시설물	충실한 디자인과 미관효과	디자인시도 일부개선	고려없음	
		개방적인 도시경계 마련	담장허물기로 공공공간 조성	개방적인 담장조성	고려없음	
		탈획일화 한 가로변 디자인	탈획일화 한 자유로운 디자인	일부시도	고려없음	
	4.2 친환경적인 가로변 조성	미적측면을 고려한 쾌적한 녹지대 조성 및 친환경소재 활용	풍부하고 친환경 녹지대 조성	일부 녹지대 설치	고려없음	선택
	4.3 건축후퇴선 내 공공활용	미관지구 건축후퇴선내 공지활용	활발한 공지활용	일부활용시도	고려없음	선택
	4.4 테마설정형 가로 조성	거리의 지역성 및 문화적 정체 보유	테마의 성공적 구현	일부 활용과 장래계획수립	고려없음	권고
보행가로특성의 활성화 (차량 통제 거리등)		적극적인 차량통제 거리조성	일부 활용과 장래계획수립	고려없음		

●선택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

●권고 :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장되는 사항

상·법규나 기준이상의 실현과 충분한 고려, 여성친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음

중·기준만족이나 일부고려, 여성친화적 고려가 인지됨

하·기준미달 혹은 고려없음, 전혀 느낄 수 없음



1.1 여성친화보행로 설치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여성친화보행로」란 일반보행로의 일부 혹은 전체에 여성보행자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여 보행만족도와 보행안전도를 높인 친여성 보행보도를 말한다. 여행길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친화보행로를 조성함으로써 일반보행로와 차별화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교통약자 모두가 여성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보행길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표

여성이 행복한 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보행로의 일부 혹은 전체에 일정 폭 이상을 가진 여성친화보행로를 마련하도록 한다.

규정

여성친화 보행로의 적정 유효폭 확보 및 보행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감재 특색

- 보행로에는 최소 1.5m 이상의 여성친화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한다(2m이상 권장). 단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이상 완화할 수 있다.
- 여성친화보행로 안에는 가로수를 포함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적정 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
- 여성친화보행로는 벤치나 자전거거차소와 같이 시설물의 이용에 일정공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활용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 여성친화보행로는 자전거길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여성친화보행로는 가급적 평탄하게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한다(중단기울기는 최소1/120이하로 하며 횡단기울기는 1/50~1/25로 한다).
- 맨홀이나 점검구 등은 가급적 보행로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여성친화보행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여성친화보행로의 포장재는 부드럽고 일체성을 가진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 만일 마감재의 이음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2mm 이내로 한다.
-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우천 시 빗물처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 논슬립이 있는 경우 가급적 걸리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 한다.
- 여성친화보행로는 건물이나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각종 대중교통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여성친화보행로 설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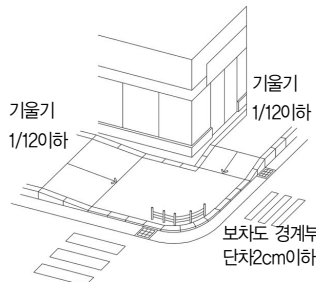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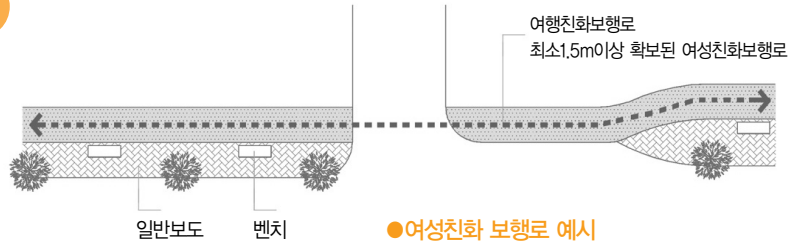
| 적용등급 선택 |

주요시설과 여성친화 보행로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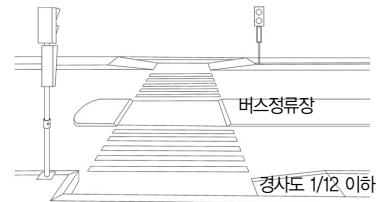
도로단차, 턱의 장애 해소

- 여성친화보행로는 인근의 공원, 광장, 문화미당 등에 연계되어 고립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횡단보도 진입부, 보도와 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대중교통 출입구 등은 단차를 없애고 높낮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경사면으로 단차를 제거한 부분의 폭은 90c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기울기는 최소1/120이하).
- 바닥 마감재가 변화하거나 바닥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차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경사도 1/120이상의 경사면이 3m이상 이어지는 경우 주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핸드레일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본 지침에서 명기하고 있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참조한다.

예시



●교차로 부분에서 보도천체를 낮춘 구조



●버스중앙 차로부분 버스정류장



1.2 여성친화교차로 계획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여성은 체력적으로 약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유아를 동반하거나 굽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교차로의 보행거리를 줄이는 편리한 보행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목표

보행로의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교차횡단보도 또는 보행광장 등을 활용하며 보행자 중심의 단거리 여성친화교차로를 제공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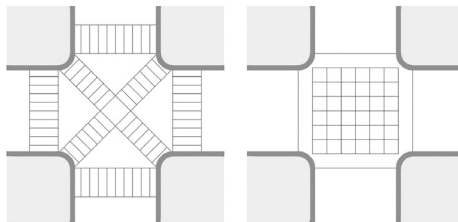
보행자중심의 짧은
동선 횡단보도 확보

- 보행로는 보행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지하터널이나 육교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가급적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보행거리를 짧게 한 여성친화교차로로 계획한다.
- 보행거리를 짧게 하기 위하여 교차횡단보도 혹은 보행광장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
-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보도보다 낮아지지 않고 직접 횡단할 수 있도록 높게 설치된 횡단보도)로 설치할 수 있다.

잔여 횡단시간표시
확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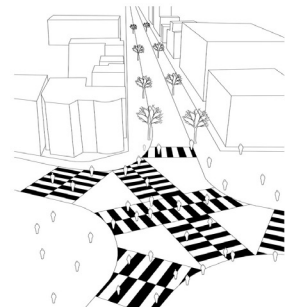
- 폭이 넓고 횡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신호등 횡단보도에서는 잔여횡단시간을 알리는 시설물을 여러 개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예시



● 교차 횡단보도

● 동시교행 교통광장



● 교통광장 예시도



여성 편의시설 확충 1.3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여성은 육아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돌봄노동 그리고 직장업무 등 동시다발적이고 과중한 일을 하게 된다. 또한 교통상황이나 사회현상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당황하는 경우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러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

목표

보행로를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마련한다.

규정

지역성을 반영한 여성 편의시설 및 생활정보 전달시스템 마련

- 지역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여성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예) 보행로 주변에 자전거나 유모차 대여서비스 등 운영
- 광폭교차로나 지하철용 출입구에 만남의 장소 등 설치
- 보행로나 도로의 중요위치에 교통상황이나 생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
- 필요한 정보를 문의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시설 또는 정보전달시스템을 고안 운영한다.

예시



●도로변 정보전달 시스템



1.4 보행로(여성친화보행로 포함) 개보수에 지역 의견 반영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보행로(여성친화보행로 포함)의 바다교체 공사 등이 시내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 혼잡 및 차량체증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수도, 하수도 공사 등 도로 하부에 매설되어야 하는 공사가 있을 때 마다 보행로 점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여성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표

인접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밀접한 보행로(여성친화보행로 포함)의 개보수 공사 시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의견수렴을 한다.

규정

보행로 개보수 공사시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수립

- 보행로의 유지관리 보수 계획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주민을 참여시킨다.
- 공사의 규모와 기간 등을 명시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주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서 공사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안전한 보행자 동선을 마련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공사현수막 등의 설치시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며 보행로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재료를 사용한다.
- 지역여성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보행로 바닥재의 교체 시 미끄럼방지와 같은 기능성이 좋고 디자인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지역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보행지원시설 설치 2.1

| 적용등급 필수/선택 |

도입배경

장거리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나 짐을 가지고 있는 여성 그리고 유아를 동반한 보행자들을 고려할 때 보행환경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간격의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차량중심 안내판이 아닌 보행자중심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성 및 모든 보행자가 거리를 쉽게 인지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표

적정위치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판이나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 및 조정시설 등을 제공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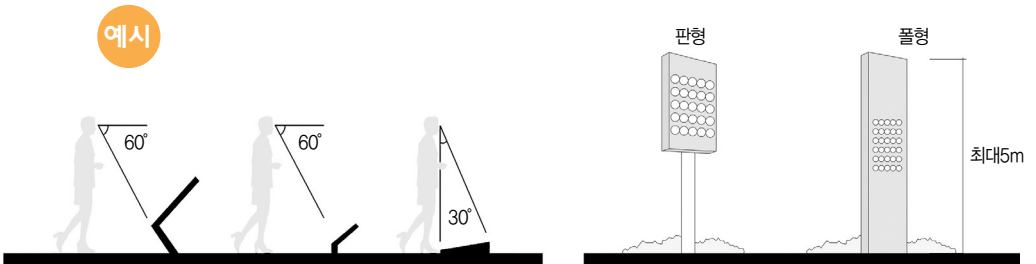
보행로 주변에 쉼터 제공 및 쾌적성 확보

- 보행로 인근에 약 300m 전후의 간격으로 벤치를 포함한 쉼터를 제공한다.
- 쉼터는 여성친화보행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시선의 은폐와 차단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쉼터를 계획할 때에는 식재나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며 친환경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쉼터와 연계하여 소공원, 수변공간, 미술품·전시물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안내판은 보행자가 보행로에서 인지하기 쉽도록 적당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내판의 적정성 및 명료도와 디자인

- 안내판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 위치에 적절한 개수를 설치하도록 한다.
- 보행 중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며 사용가능한 생활편의시설(화장실, 정보센터 등)이나 지역의 주요시설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한다.
- 안내판은 명료하고 통일감이 있으며 미적 감각을 가지도록 디자인한다.

예시



●사용자의 시각과 표지의 형태

- 최대면적:1면 최대3㎡이내 표시
- 위치: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색상:저채도색상 적용



2.2 보행로 시설물의 적절한 배치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현재 보행로에는 다수의 설비 및 전기 관련 시설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권을 침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들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보행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시각적으로 차단된 공간에서는 사고위험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도시미관과 여성안전 측면을 고려한 보행로변의 시설물 배치와 조경 조성이 요구된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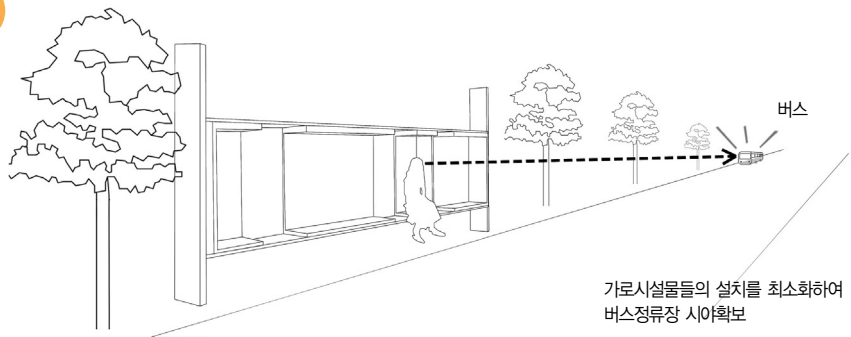
해당 장소에 요구되는 시설물을 신중히 선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시야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하며 조경 또한 시야확보측면에서 조성하도록 한다.

규정

보행로 주변의
시야확보를 고려한
시설물과 조경배치

- 모든 시설물은 지역의 사용빈도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 동일 시설물은 일정거리를 두어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인근에 설치되는 여러 종류의 시설물은 시설물 설치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모든 시설물은 확보된 여성친화보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시설물과 조경을 할 때에는 어디서나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트인 공간감을 가지도록 한다.
- 버스정류장은 반드시 쉼터(앉아 쉬는 것 포함)를 포함하여 설치해야 하고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시각차폐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시





보행로와 대중교통의 연계성 확보 2.3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보행로의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게 하려면 중장거리용 대중교통의 활용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보행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택시와 같은 개별 이동수단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친화보행로에서는 지하철출입수 수직 동선체계를 원활히 해주는 엘리베이터 등과 연계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

여성친화보행로와 택시승강장 및 지하철을 연계하고 가능한 장애 없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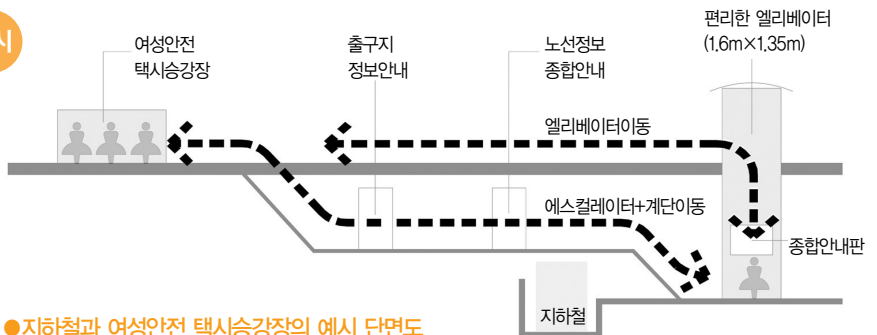
지하철 입구와 보행로의 원활한 연결

- 여성친화보행로와 지하철역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여성친화보행로부터 진출입하는 지하철역 출입구는 가능한 편리하고 장애가 없는 수직 동선(엘리베이터 등)을 권장한다.
- 엘리베이터의 내부크기는 1.6m×1.35m으로 하여 유모차와 휠체어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한다.
- 에스컬레이터는 유효폭 0.8m이상, 속도는 분당 30m 이내로 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 본 지침에 명기하고 있지 않는 세부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에 따른다.

지하철역 주변에 여성안전 택시승강장 설치

- 여행길에서는 지하철 부근에 여성안전 택시승강장을 마련하여 손쉽게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 지하철과 여성안전 택시승강장의 예시 단면도



2.4 여성참여 여행길 만들기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여성친화적 길 만들기과 도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계획에 여성전문가 및 거주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섬세함과 배려심, 생활인으로서의 이해심은 도시환경에서 요구되는 순기능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도시 및 지역계획 참여는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으로 실제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목표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도시조성사업에 여성전문가 및 거주자를 일정비율 참여시키고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다.

규정

지역계획 수립 시

•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 관련 심의나 아이디어 개발에 여성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지역 여성 의견 수렴 및
여성모니터링제 도입

• 세부계획이나 설계공청회 또는 인준단계에서 여성전문가 뿐 만아니라 해당지역의 여성거주자 및 생활인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한다.

• 설치 전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성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야간 적정조도 유지 3.1

| 적용등급 필수/선택 |

도입배경

야간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차량중심의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보행중심의 보도조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간에 적정조도를 유지하는 것은 횡단보도와 보행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목표

야간에 시설물의 인지를 높여 보행자의 보행사고를 줄이고 아울러 야간 보행자의 행동이 잘 식별되어 외부로부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행중심의 조명을 강화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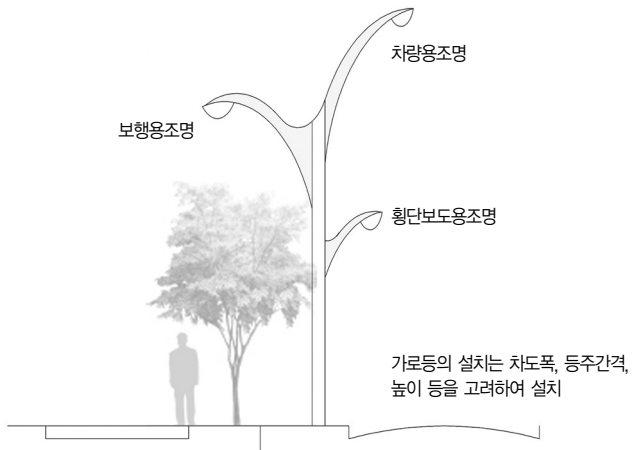
보행로와 교차로의 적정조도

- 차도와 보행로는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로에도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보행로의 조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고 30lux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그늘진 곳, 움푹 들어간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조명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 조경요소로 인해 조명이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리한다.

횡단보도용 별도 조명설치

- 야간에 표시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한다.
-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횡단보도용 조명을 설치하거나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여 조도를 500lux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사고위험성이 높은 교차횡단보도나 교통광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예시





3.2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로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보행로에는 여러 종류의 맨홀이나 점검구 또는 장애물이 있어 보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은 신체적으로 보행에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며 보행 시 안전사고도 다수 발생한다. 여행길에서는 이와 같은 보행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목표

사전에 체계적인 도로 설비계획과 시설풀비를 통해 보행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안전한 구조로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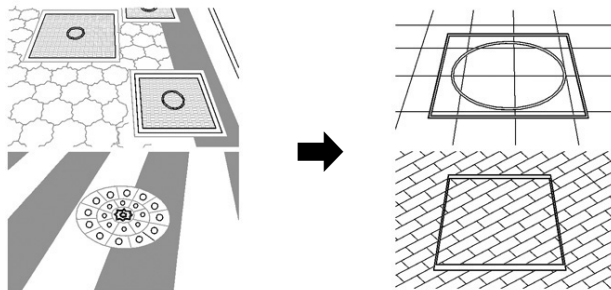
안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블라드) 설치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블라드)은 모서리가 부드러운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주야 모두 식별 가능하도록 하며 가급적 탄성을 가진 소재의 것으로 한다.
- 횡단보도의 진입부, 보도와 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대중교통 출입구등 높낮이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곳에는 맨홀, 점검구, 트렌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점검구 통합활용
또는 맨홀/배수구의
효과적 설치

- 점검구는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소를 줄이도록 한다.
- 우수시설과 트렌치 등은 녹지나 차도 쪽으로 설치하고 가급적 보행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 보행로 내에 맨홀, 점검구, 트렌치 등이 설치될 경우 마감재는 보행로 포장재와 같은 재질로 해야 하며 틈새를 좁혀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예시



●보행로 점검구 및 맨홀 설치 개선도



여성안전 택시승강장 설치 3.3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도시에 무분별하게 정차하는 택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승하차 시에 위협을 수반한다. 노유자, 유아동반여성의 경우 택시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여성 승객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사용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전 택시승강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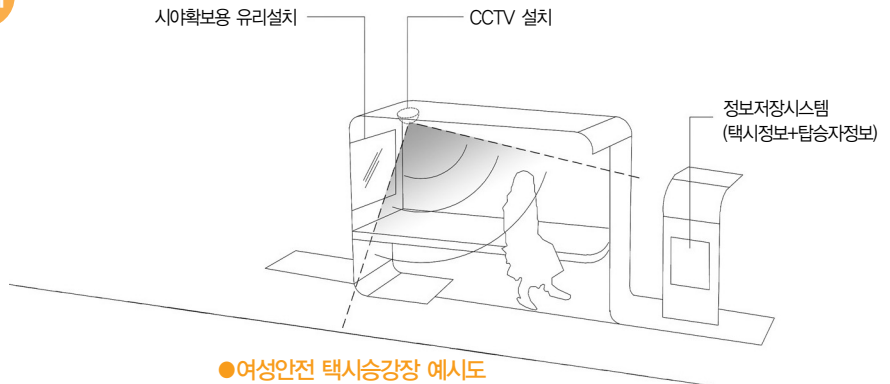
도로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야간 모두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여성안전 택시승강장을 마련한다.

규정

여성안전 택시승하차장 설치

- 거리 중에 여성의 활용빈도가 높고 대중교통과 환승되거나 주요시설이 집중되는 곳을 선정하여 여성안전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고 표시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여성안전 택시승강장은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주변으로부터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고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 주변 조명기준 이상으로 조명을 설치한다.
- 여성안전 택시승강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식별번호와 구역인식 표시를 마련하여 사후 승하차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CCTV를 설치하고 또한 CCTV 설치장소임을 표시하여, 승차한 택시가 인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예시





3.4 범죄예방 CCTV 설치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여성에게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길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목표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여성 밀집지역, 또는 여성안전 택시승강장 주변 등의 필요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규정

적정위치에 범죄예방
CCTV 설치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여성 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한다.



쾌적한 보행로 및 가로변 디자인 4.1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행복한 도시생활을 위해 보행로 및 가로변은 쾌적하고 아름답게 고안될 필요가 있다. 보행로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구역들과 여러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들 시설물의 외관, 마감재, 디자인패턴 등은 도시미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시미관과 여성안전 측면을 고려한 보행로 및 가로변의 디자인과 시설물의 고안이 요구된다.

목표

보행 및 가로변의 디자인과 각종 시설물을 여성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고안한다.

규정

전선지중화 실시 및
설비 통합화

- 설비통합화의 일환으로 도로의 전선을 지중화 하도록 한다.

미적이고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마감과 시설물

- 바닥재는 특정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색채나 종류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패턴을 사용하는 등의 조잡함은 피하도록 한다.
- 타일계열의 바닥재는 줄눈을 좁혀 보행 시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석 계열의 거친 마감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디자인과 색채로 고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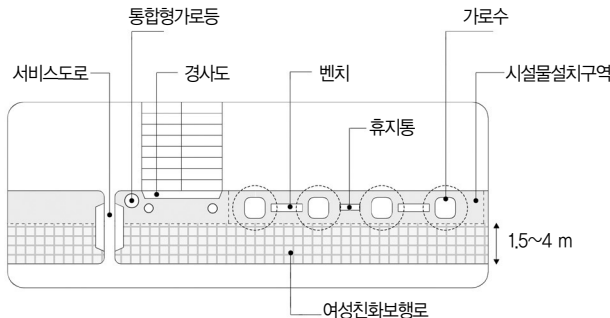
개방적인 도시경계 마련

- 담장 등의 경계 설정계획에 개방감을 적극 도입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며 답답한 경계를 해소함으로써 밝고 쾌적하며 여성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되도록 한다(담장제거 후 식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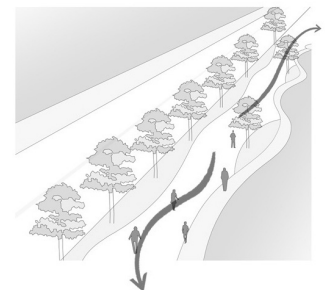
탈획일화 한
가로변 디자인

- 가로 배치나 가로변 공간계획에서 획일적인 배치를 지양하고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도 미적인 느낌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예시



●가로변 시설물 설치 구역의 지정



●역동적인 가로 디자인계획



4.2 친환경적인 가로변 조성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 도시환경은 도시민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대인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공공이 사용하는 보행로의 가로변조성 계획은 삶의 질과 연계되어 친환경 요소의 도입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목표

보행자와 도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가로변을 조성한다.

규정

미적 측면을 고려한
쾌적한 녹지대 조성 및
친환경 소재 활용

- 가능한 많은 곳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녹지대 조성 시에는 식재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차단용, 경관용 등 수목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또한 친환경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한다.
- 수목은 높낮이에 있어서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4계절 전체에 걸쳐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다. 단, 수목식재에 의해 시야트임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 가로변 조성에 필요한 재료는 기급적 친환경적인 소재의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예시



●가로변 벤치의 친환경 디자인 예시도



건축후퇴선 내의 공공활용 4.3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현행법에서는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후퇴하여 공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로 점유되거나 점유물이 적치되는 등 미관과 공공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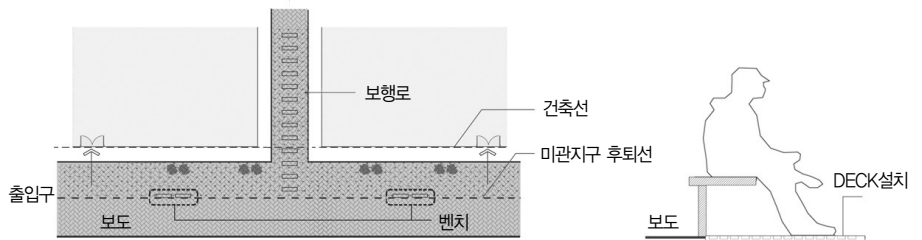
미관지구 후퇴로 인한 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관지구 내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여성 및 노유자와 다수의 도시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규정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내 공지활용

- 미관지구 후퇴선 내의 공지에 공공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공간이나 공공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시설을 마련할 때에는 가급적 미관과 기능을 고려한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하며, 사유지 활용에 따른 관리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예시



● 건축후퇴선 내 공지 활용 예시



4.4 테마설정형 가로 조성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가로는 이제 단순히 통행기능만을 갖는 공간이 아닌 도시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도시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성이 투영된 테마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로디자인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도시민 스스로가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여성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긍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테마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목표

문화적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테마를 설정하여 가로 조성계획을 추진하도록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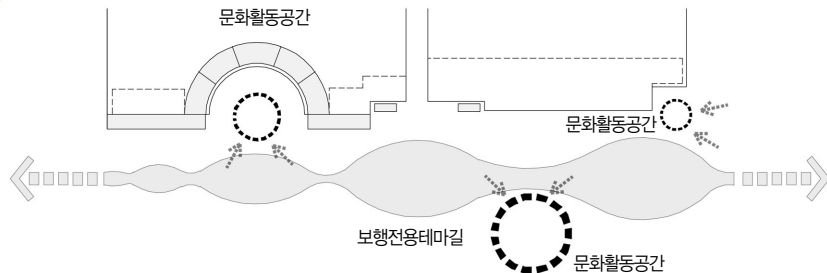
거리의 지역성 및 문화적 정체성 보유

- 지역특성이 녹아 있는 테마를 찾고 공동의 관심사를 끌어낼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한다.
- 테마에 어울리는 문화 활동 공간이나 시설들을 배치하고 관리계획을 마련한다.
- 테마설정과 가로계획, 운영에 있어 지역 여성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보행가로특성의 활성화 (차량 통제 거리 등)

- 지역 특성화를 고려하여 차 없는 거리, 보행전용거리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 테마길에서는 여행길 선정표식을 주제와 어울리는 형식으로 디자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시



●테마설정형 가로 조성 예시

2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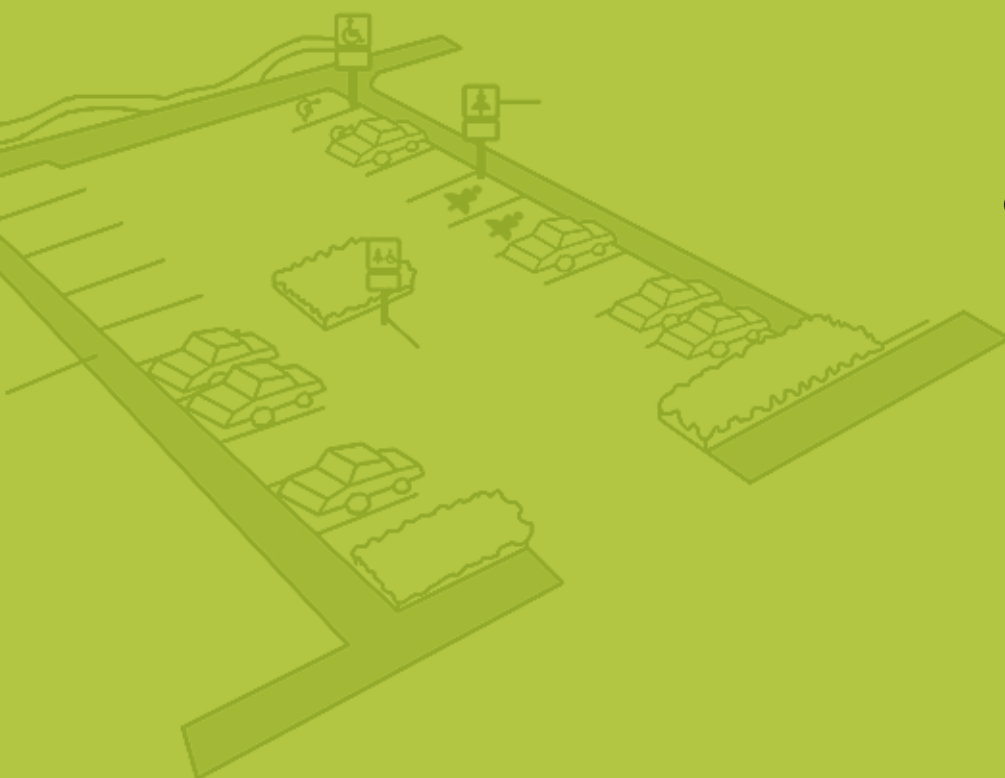
여행주차장 가이드라인

여행주차장 평가표

여행주차장 평가기준표

여행주차장 매뉴얼(세부규정)

*별첨(주차장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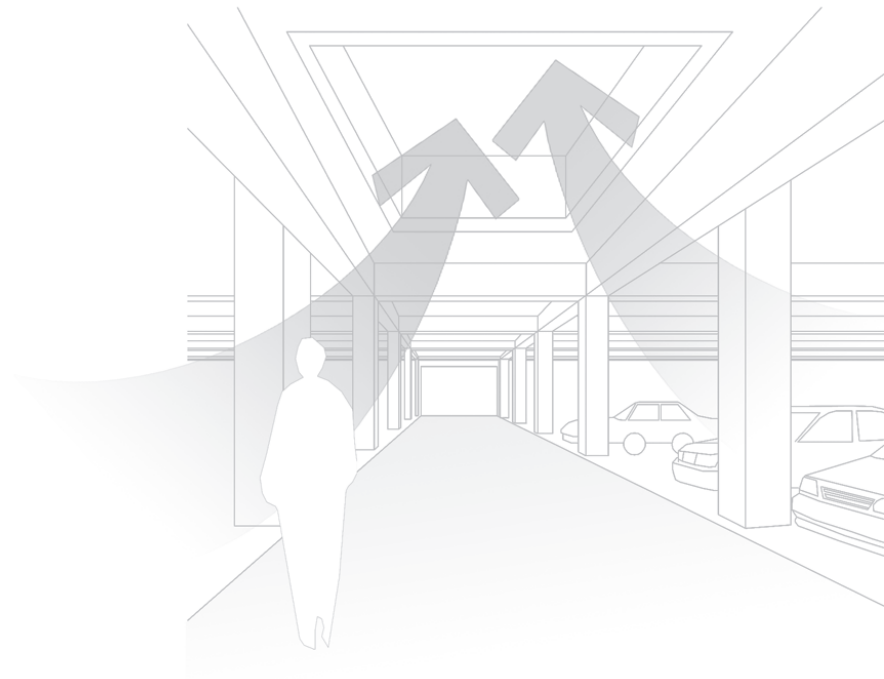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구분	가이드라인	등급
1. 편의 Convenienc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도시	1.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2. 노유자동반여성우선주차장제 운영 3. 고령여성운전자 및 긴급차량 임시주정차제 운영 4. 여성공동주차장제 도입	필수 선택 선택 권고
2. 배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도시	1. 주차장내 여행화장실 설치 2. 주차장 내 보행로 확보 3. 주차출입램프의 편리성 확보 4. 공공시설 주차서비스	선택 선택 선택 권고
3. 안전 Safety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도시	1. 방범 및 경보시설 설치(CCTV 등) 2.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3. 지하주차장의 시야 확보 4.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필수/선택 필수/선택 필수/선택 선택
4. 쾌적 Amenity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도시	1. 쾌적한 지하주차장 조성 2. 친환경계획 도입 선택 친환경인증제 도입 3.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4. 공공시설 지상주차장 여성운전자용 그늘 조성	선택 권장 선택 선택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평가표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O	X	적용등급	비고(평가기준)
편의	1.1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여성우선 주차면의 확보			필수	• 전체주차대수의 20% 이상 (2.3m×5.0m)
		여성우선 주차면 출입용이성				•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서 30m 이내
안전	3.1 방법 및 경보시설 설치	지하 주차장 내 CCTV 및 비상벨의 설치			필수	• 지상주차장은 선택
	3.2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여성우선주차구역의 조도 및 야간조명 확보			필수	• 130lux 이상
	3.3 지하주차장의 시야 확보	여성우선 주차구역 주변의 시야 확보			필수	• 시야 트임이 좋은 위치에 기둥식 구조

● 필수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X 일 때 인증불가)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평가기준)
편의	1.2 노유자동반 여성우선주차장제 운영	주차출입 용이성 및 주차구역의 접근성				선택	전체주차대수 5%이상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설치대수					
	1.3 고령여성운전자 및 긴급차량임시주정차제 운영	임시주정차 설치대수				선택	
		장소의 안전성 및 접근성					
1.4 여성공동주차장제 도입	여성공동주차장의 설치구역				권고	일부구역 공동주차장제 도입	
	여성공동주차장 장소의 안전성 및 편의성						
배려	2.1 주차장 내 여행화장실 설치	화장실의 접근성				선택	주차장 출입구나 여성우선 주차구역에 인접 설치 권장
		화장실의 편의성 및 변기 개수					
	2.2 주차장 내 보행로 확보	보행통로 위치와 통로폭의 적정성				선택	
		안전한 바닥 재료					
2.3 주차출입램프의 편리성 확보	여유있고 편리한 주차장램프 설치				선택		
2.4 공공시설 주차서비스	공공시설에 주차대행 서비스 제공				권고	고령운전자 및 노유자동반 여성 지원	
안전	3.1 방법 및 경보시설설치	주차장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선택	
		지상 주차구역 내 CCTV 및 비상벨의 설치					
		여성우선주차구역의 음성전송장치장착 CCTV					
	3.2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주차장의 조도 및 야간조명 확보				선택	130lux 이상
3.3 지하주차장의 시야 확보	지하주차구역 내의 시야 확보				선택		
3.4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의 접근성				선택		
	투명창 설치						
쾌적	4.1 쾌적한 지하주차장 조성	충분한 채광, 환기 확보				선택	법정기준의 1.5배 이상
		자연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붕개구부등 활용					지상으로 접속된 주차장에 한함
	4.2 친환경계획 도입	친환경적인 재료사용 (지상:투수성재료, 지하:친환경재료 등)				선택	건축물 인·허가 시 친환경인증 제도반영 권장
		내구성 재료사용 및 개보수 용이성 확보					
4.3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원활한 차량출입을 유도하는 벽과 바닥의 표지설치				선택		
	경계 허물기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주차장 내외부에 쓰레기적치 등 잉여 공간 없애기						
4.4 공공시설 지상주차장 여성운전자용그늘 조성	주차구역 인지와 식별이 용이한 조명 및 색체계획				선택		
	공공시설 지상 주차장에 그늘 마련을 위한 식재나 시설물 조성						

● 평가표 중에 진한 글씨체 : 필요성 높은 항목

● 선택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

● 권고 :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장되는 사항

상-법규나 기준이상의 실현과 충분한 고려, 여성친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음

중-기준만족이나 일부 고려,여성친화적 고려가 인지됨

하-기준미달 혹은 고려없음, 전혀 느낄 수 없음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평가기준표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상	중	하	적용등급
편의	1.2 노유자동반 여성우선주차장제 운영	주차출입 용이성 및 주차구역의 접근성	장애자주차구역인접	출입구에서 30m 이내 또는 여성우선주차장에 인접	설치안함	선택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설치대수	5% 초과	5% 이하	설치안함	
	1.3 고령여성운전자 및 긴급 차량입시주차장제 운영	임시주차장 설치대수	2대 이상설치	2대 미만설치	설치안함	선택
		장소의 안전성 및 접근성	출입구와 보행통로에 인접	보행통로에 인접	설치안함	
	1.4 여성공동주차장제 도입	여성공동주차장의 설치구역	설치구역 적용		설치구역 미적용	권고
		여성공동주차장 장소의 안전성 및 편의성	주차장 출입구나 여성우선 주차구역에서 30m 이내	30m 이상 ~50m 미만	50m 초과	
배려	2.1 주차장 내 여행화장실 설치	화장실의 접근성	주차장 출입구나 여성우선 주차구역에서 30m 이내	30m 이상 ~50m 미만	50m 초과	선택
		화장실의 편의성 및 변기 개수	여행화장실 설치	일반화장실 설치	설치안함	
	2.2 주차장 내 보행로 확보	보행통로 위치와 통로폭의 적정성	통로폭 1.2m 이상	1.2m 미만	설치안함	선택
		안전한 바닥 재료	내구성재료 (타일, 돌마감)	페인트(에폭시,우레탄 등)	제물치장 콘크리트	
	2.3 주차출입램프의 확보	여유있고 편리한 주차장램프 설치	직선형	직선형+곡선형	곡선형	선택
	2.4 공공시설 주차서비스	공공시설에 주차대행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미제공	권고
안전	3.1 방범 및 경보시설설치	주차장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설치		설치안함	선택
		지상 주차구역 내 CCTV 및 비상벨의 설치	설치		설치안함	
		여성우선주차구역의 음성전송장치장착 CCTV	설치		설치안함	
	3.2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주차장의 조도 및 야간조명 확보	130lux 이상		130lux 미만	선택
	3.3 지하주차장의 시야 확보	지하주차구역 내의 시야 확보	개방감이 좋은 기둥식구조	기둥식 구조	기둥식+벽식구조	선택
	3.4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의 접근성	여성주차구역 30m 이내		30m 초과	선택
투명창 설치		1/2이상 투명창설치	일부 투명창설치	투명창 설치 없음		
쾌적	4.1 쾌적한 지하주차장 조성	충분한 채광, 환기 확보	법정기준의 1.5배 이상	법정기준이상	법정기준 미만	선택
		자연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붕개구부등 활용	썬큰 또는 트라이트설치		설치안함	
	4.2 친환경계획 도입	친환경적인 재료사용 (지상:투수성재료, 지하:친환경재료 등)	투수성재료 및 친환경재료 사용	친환경재료이나 투수성재료 사용	친환경,투수성 재료사용 안함	선택
		내구성 재료사용 및 개보수 용이성 확보	내구성재료 (타일, 돌마감)	페인트마감 (에폭시,우레탄 등)	제물치장 콘크리트	
	4.3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원활한 차량출입을 유도하는 벽과 바닥의 표지설치	벽과 바닥에 유도표시있음	벽과 바닥 한 곳만 유도표시 있음	유도표시 없음	선택
		경계 허물기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경계벽없고 원활한 교통 소통	경계벽있으나 원활한 교통 소통	경계벽 있음	
주차장 내외부에 쓰레기적치 등 잉여 공간 없애기		쓰레기등 적치공간 없고 쾌적한 환경 마련	쓰레기 등 적차공간 없음	쓰레기 등이 적차가능한 구조		
주차구역 인지와 식별이 용이한 조명 및 색채계획		창의적인 색채계획 마련	원만한 색채 계획	색채계획 없음		
4.4 공공시설 지상주차장 여성운전자용그늘 조성	공공시설 지상 주차장에 그늘 마련을 위한 식재나 시설물 조성	디자인이 가미된 그늘식재나차양막 설치	일부 그늘식재나 차양막 설치	설치안함	선택	



1.1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여성들은 짐을 싣고 내리거나 유아를 동승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차 환경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이 가진 여러 가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여성우선 주차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표

주차 진출입 및 접근이 용이한 곳에 여성우선 주차장소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확보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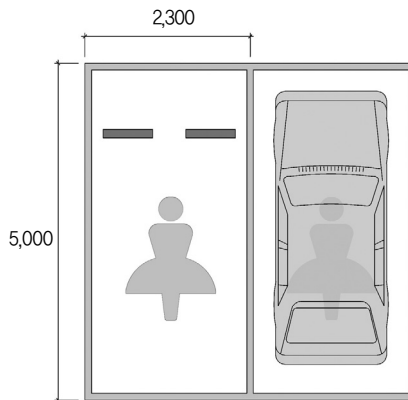
여성우선 주차면의 확보

-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대수는 전체 주차대수의 20% 이상으로 한다.
- 여성우선 주차구역은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은 권장사항으로 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차장 출입의 용이성 및 주차구역의 접근성

- 30대 이상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는 여성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하여 표시하고 출입이 용이한 장소(주차장 출입구 가까운 곳, 계단 및 코어에서 가까운 곳 등)에 설치한다.
- 부설주차장 중 여성이용이 많은 판매, 문화 및 복지시설, 공원 등에도 확대 운영한다.

예시



● 여성우선 주차장제 예시도



노유자동반여성우선주차장제 운영 1.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노유자를 동반한 여성운전자의 경우 주차의 기술적 어려움뿐 아니라 노유자를 돌보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유자를 동반한 여성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장제를 운영하고자 한다.

목표

노유자동반 여성운전자가 주차장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목적지로의 출입 및 접근이 용이한 곳에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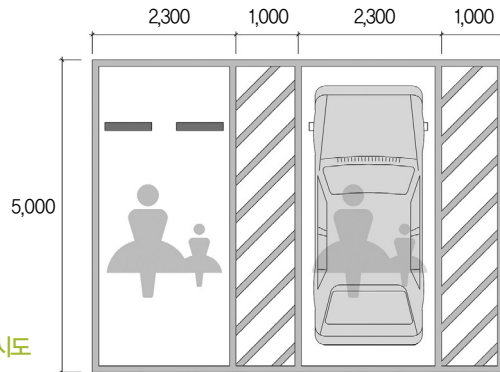
주차출입 용이성 및 주차구역의 접근성

- 30대 이상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는 노유자동여성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하여 표시하고 출입이 용이한 장소(주차장 출입구 가까운 곳, 계단 및 코어에서 가까운 곳 등)에 설치한다.
- 부설주차장 중 여성 및 노유자 이용이 많은 의료, 판매, 문화 및 복지시설, 공원 등에도 확대 운영한다.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설치대수

- 노유자들의 활동공간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은 3.3m×5.0m이며 설치대수는 전체 주차대수의 5%~1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구역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에서의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장제 도입은 권장사항으로 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구역은 장애자주차구역과 인접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예시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장제 예시도



1.3 고령여성운전자 및 긴급차량 임시주정차제 운영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고령의 여성운전자와 긴급차량운전자(비상차량운전자 포함)를 위한 임시주정차구역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표

목적하는 곳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시각적 개방감의 확보가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한 임시주정차구역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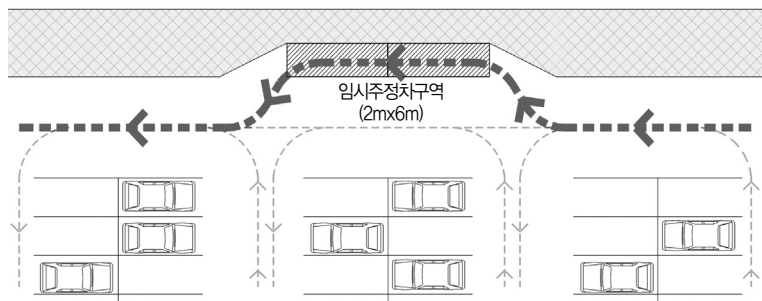
임시주정차 설치 대수

- 설치 개소 및 설치 대수는 최소한 1~2개소에 2대 이상 임시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한다.
- 임시주정차구획은 2m×6m이상으로 한다.

장소의 안전성 및 접근성

-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임시주정차구역을 보행통로에 인접하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임시주정차구획은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또한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시





여성공동주차장제 도입 1.4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경사지나 다세대 등이 밀집한 주거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상당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곳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약자인 여성운전자의 경우 복잡하고 좁은 길을 운전해야 할뿐 아니라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해 보행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목표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주차가 편리한 곳 일부를 여성 및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경사지하부 단지초입부 등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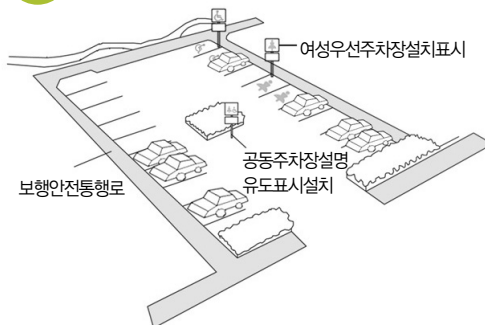
여성공동주차장의 설치구역

-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일부를 할애하여 여성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일부구획을 할애하여 그 지역 여성운전자를 위한 공동주차장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 주차구획 대수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별도 적용한다.

여성공동주차장 장소의 안전성 및 편의성

- 공동주차장은 고립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 주차단위 구획은 직각주차 2.5m×5.1m, 평행주차 2.0m×6.0m를 원칙으로 하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법
적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예시





2.1 주차장내 여행화장실 설치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노외주차장에서는 출입과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유아동반여성이나 고령여성운전자를 위한 여행화장실을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표

일정 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에는 여행화장실을 설치하여 여성운전자나 노유자를 동반한 운전자들에게 사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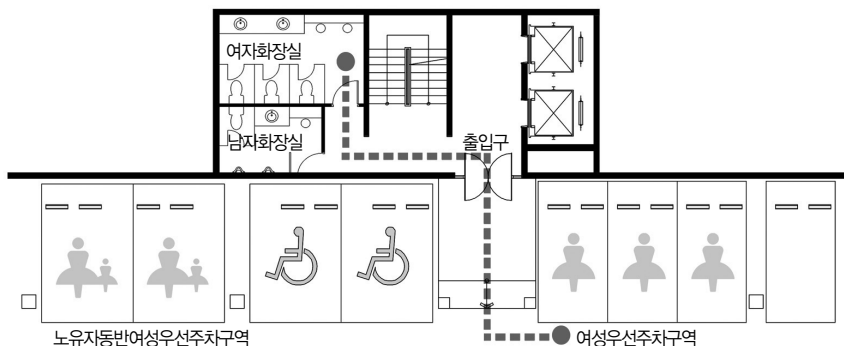
화장실의 접근성

- 여행화장실은 여성우선주차구역에 가까운 곳 또는 코어 및 계단실에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30대 이상 노외주차장에는 여행화장실 설치를 권장한다.

화장실의 편의성 및 변기 개수

- 여자화장실의 변기 개수는 전체 주차대수 30~50대 일 때 1~2개소, 50~100대 일 때 2~3개소, 100~200대 일 때 3~4개소, 200대 이상일 때 4개소이상 적용 설치를 권장 한다.
- 여성화장실의 바닥 마감은 안전을 위하여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 기타사항은 여행화장실관련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예시





주차장내 보행로 확보 2.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주차장 시설은 차량 동선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동반여성이나 고령의 여성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내에는 적절한 보행로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있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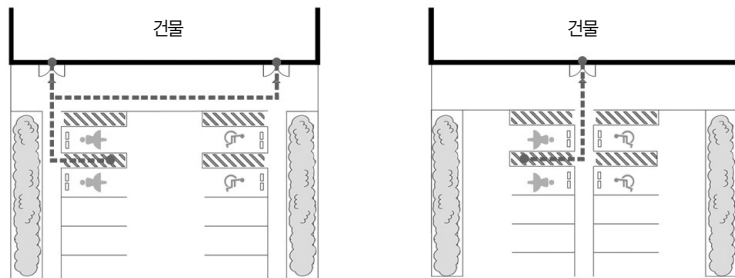
보행통로 위치와
통로폭의 적정성

- 주차구획 공간을 계획할 때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그 통로에 적절한 조명, 그늘식재, 보안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 보행통로의 폭은 최소 1.2m이상으로 보행의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 차량 이동 통로, 주차 공간, 보행 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

안전한 바닥 재료

- 다양한 연령과 신체적 조건의 이용자들을 배려한 보행 편리성과 안정성(미끄럼방지 등)을 고려한다.

예시



● 주차장내 보행로 확보 예시도



2.3 주차출입램프의 편리성 확보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차량출입램프가 원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운전이 미숙한 여성운전자나 유아를 동반하여 운전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운전자는 심리적 긴장감과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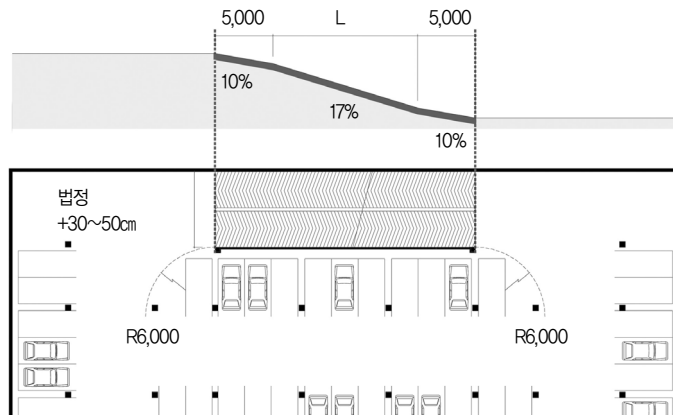
주차장 입구 및 출구와 주차장램프는 시야확보를 위해 직선형 램프의 설치를 권장하며 옹벽구조물 등 운행안전과 시야확보에 방해가 되는 설치물은 제거하고 적절한 회전반경을 확보하도록 한다.

규정

여유있고 편리한 주차장램프 설치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직선형 램프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형램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램프시작부의 일정구간은 직선화하도록 한다.
- 끝단부에 회전반경 6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램프의 폭은 법정 보다 30cm~50cm 여유를 주어 설치한다.
- 램프의 시작과 끝단부에는 시야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옹벽 설치를 금한다.
- 램프의 전구간은 밝은 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주차장출입구램프 상부가 옥외 노출되는 경우 우천시를 대비한 지붕구조와 램프 시작부에 트랜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시





공공시설 주차서비스 2.4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고령의 여성운전자나 운전이 미숙한 여성운전자들은 주차장 이용 시 특히 주차에 불편함을 느끼며, 노유자동반 여성 운전자의 경우 활동의 제약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한 여성운전자들을 배려 하고자 공공시설에서의 주차대행제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표

도움이 필요한 여성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주차대행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규정

공공시설에 주차대행 서비스 제공

- 공익요원이나 대학생 지원자들을 배치하여 도움이 필요한(고령여성운전자 또는 노유자 동반 여성) 운전자들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약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3.1 방법 및 경보시설 설치

| 적용등급 필수/선택 |

도입배경

여성운전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험발생 가능성을 예방함으로써 범죄 및 생활환경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목표

사회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소통의 모델을 도출, 여성의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규정

지하층 주차구역 내 CCTV 및 비상벨의 설치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 포함)에는 관리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장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지상주차장의 경우는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방범설비는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170cm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폐쇄회로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음성전송장치장착 CCTV

- 지하에 설치되는 여성우선 주차구역에는 특히 음성전송장치장착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지상주차장의 경우는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 지평식 노외주차장에도 확대 적용을 권장한다(선택).
-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 여자화장실에는 안전 및 비상시를 위하여 비상호출 버튼을 설치한다.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3.2

| 적용등급 필수/선택 |

도입배경

주차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주차장에 있어서 우선시 될 것은 안전이다. 따라서 여성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명 환경은 필수적이며, 비교적 채광이 열악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인공조명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표

지하주차장의 조명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광램프의 특성을 반영하고 균제도 향상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 제안하고자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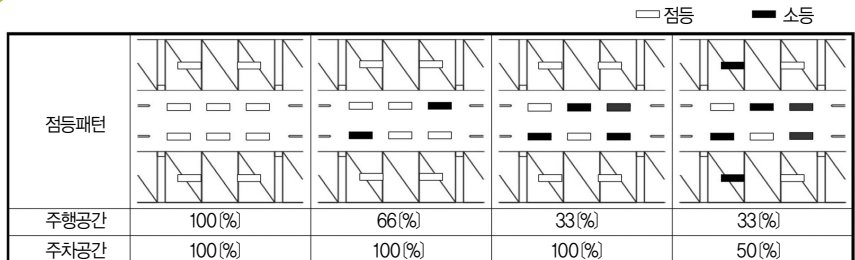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조도 및 야간조명 확보

- 여성우선 주차구역 또는 주차장 여자화장실에는 특히 일반주차장보다 더 밝게(130~200lux)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되도록 에너지절약형 및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물리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광색에 가깝게 하고 일정조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적절한 조명 계획을 통하여 야간 이용과 교통 안전성을 높이며 우범화를 미연에 방지한다.
- 눈부심이 없는 부드럽고 은은한 조명 연출이 되도록 계획한다.

주차장의 조도 및 야간조명 확보

- 자식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 지점에서 평균 150lux 이상 조도를 유지한다.
- 노상주차장, 지상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야간에 방범 및 안전을 위해 보안등을 설치하고 적정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조명기구의 간격 및 배열을 조도확보, 미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예시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는 점등패턴도



3.3 지하주차장의 시야 확보

| 적용등급 필수/선택 |

도입배경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행환경의 변화가 크고, 교통상황의 파악이 어려워 도로에서의 운전 보다 여성운전자들이 갖는 심리적 불안감은 클 수 있다. 또한 여성운전자가 주차장소를 찾거나 확인하는 상황임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시야가 충분해야 할 것이다.

목표

시각적 시야의 확보가 가능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주차하려는 장소의 확인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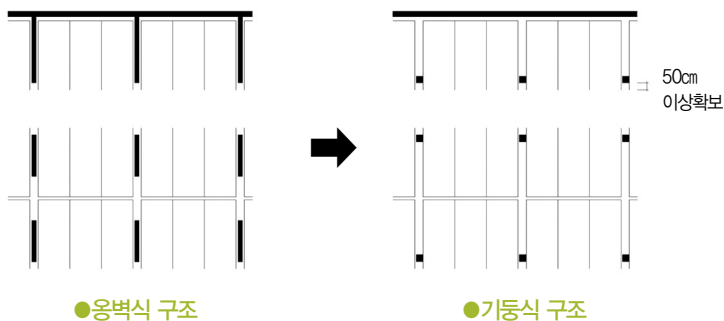
지하주차구역내의
시야 확보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우 기동식 구조를 권장하며 구조체에 의한 시야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의 출구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도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 회전반경은 도로여건에 따라 3~7m 범위 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성우선 주차구역
주변의 시야 확보

- 여성우선 주차구역은 시야의 방해가 받지 않는 곳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예시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3.4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주차장 시설의 특징상 공간적, 시각적 경계의 상황이 모호하여 범죄 유발 가능성이 야기되고 불안감이 조성된다. 안전한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여성운전자에게 주차장내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고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유모차 등이 원활히 이동될 수 있는 수직 동선을 제공한다.

목표

여성운전자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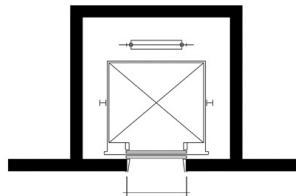
엘리베이터의 접근성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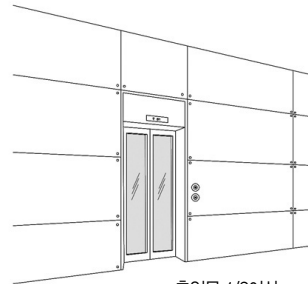
투명창 설치

-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출입문 구조는 투명창(출입문의 1/2 이상)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 썬스크린을 이용하거나 누드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권장한다.
- 여성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자 및 장비보강, 시스템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시



내경90cm이상설치



출입문 1/2이상
투명창 설치



4.1 쾌적한 지하주차장 조성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지하식 주차장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도시생활측면에서 볼 때 지하식 주차장의 환경계획은 도시의 거주성을 책임 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하식 주차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여성운전자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깊 다할 것이다.

목표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지하식 주차장의 거주성을 개선하며 도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여성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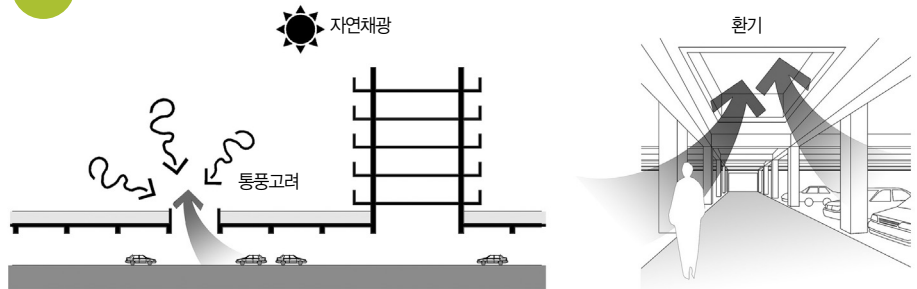
충분한 채광,
환기확보

- 지하식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제9호의 규 정에 의한 실내주차장은 25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지하식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는 충분한 채광과 환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붕개구부 등 활용

- 지하식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한 톨라이트나 섀크(D,A포함) 설치를 권장한다.

예시



● 지하 주차장 섀크 설치 예시도



친환경계획 도입 4.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교통계획이 기존의 차량위주에서 인간중심의 보행계획으로 전환되어지는 현상을 감안할 때, 주차환경에 선진화된 친환경계획의 도입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목표

주차장에 친환경계획과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여성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공공시설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친환경적인 재료사용

- 주차장상부의 지상에는 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투수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지하식노외주차장에는 미세먼지 등을 발산하는 뽕칠 등을 자제하여야 하며 재생 가능한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지하식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변이나 벽면에는 입면녹화 등 친환경요소의 적용을 권장한다.
- 현재 건축 인·허가 시 적용되는 건축물친환경인증제도에 주차장시설 기준을 포함하여 인증하도록 권장한다.

내구성 재료사용 및 개보수 용이성 확보

- 노외주차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공성이 용이하여 즉각적인 개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 노외주차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하여야 한다.



4.3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현재의 주차장은 주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디자인과 획일적인 환경계획으로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 위주로 계획되고 운영됨으로서, 여성운전자로 하여금 불쾌감과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목표

담장을 허물어 개방성을 확보하며 공공성을 높인 열린 공간을 지향함으로써, 여성운전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의 쾌적성을 증대 시킨다.

규정

원활한 차량출입을 유도하는 벽과 바닥의 표지설치

- 주차장 출입 시나 주차구획으로의 이동 시 이동 동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차량유도용 표지가 벽과 바닥에 적용되어야 한다.
- 차량유도용 표지는 차량통행과 주차에 시각적, 심리적 방해를 주지 않는 적절한 재료와 디자인이 요구된다.

경계 허물기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주차장 경계벽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울타리나 식재의 설치, 보행가로변 휴게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보안, 안전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하는 경우, 디자인은 위압적이지 않게 한다.
- 벽면의 입면 녹화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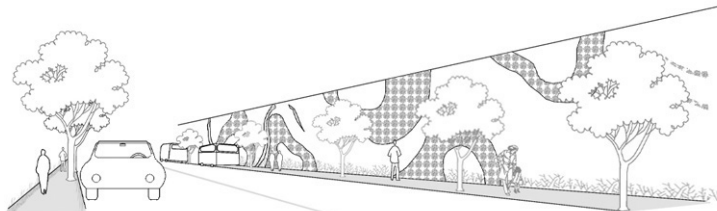
주차장 내외부에 쓰레기 적치 등 잉여공간 없애기

- 주차장내 쓰레기 적치장 등 잉여공간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구역 인지와 식별이 용이한 조명 및 색채계획

- 주차구역의 인지 및 식별이 용이한 색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는 시각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보행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 한다.
- 눈부심이 없는 부드럽고 은은한 조명연출이 되도록 한다.

예시



벽면의 입면 녹화를 통하여 풍성한 도시를 디자인한다.



공공시설 지상주차장 4.4 여성운전자용 그늘 조성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남성운전자들에 비하여 차량 승하차 시간이 긴 여성운전자들은 지상주차 시 여름철 복사열이나 겨울철 눈 등으로 불편감을 느끼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 또한 삭막한 주차장에 그늘을 만드는 것은 도시미관측면에서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이에 여성우선주차장이나 노유자동반여성우선주차장 등 여성운전자들의 사용편의를 위해 그늘 마련을 권장한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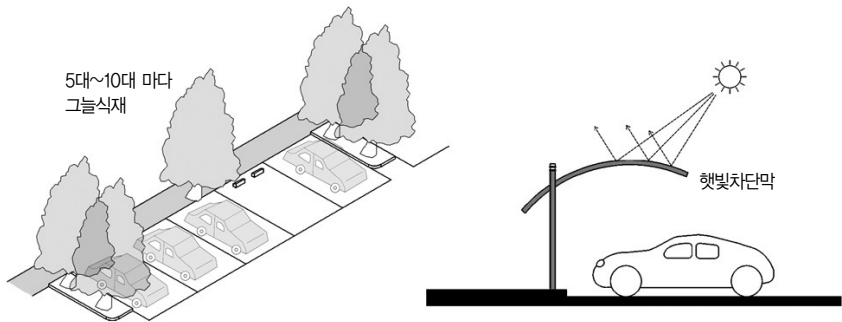
지상주차 시 태양복사열 등을 차단하여 여성운전자들에게 쾌적함을 주고 식재 등을 통한 디자인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삭막한 주차장을 탈피하고자 한다.

규정

공공시설 지상주차장에
그늘 마련을 위한
식재나 시설물 조성

- 여성우선주차장이나 노유자동반여성우선주차장 등 여성운전자를 위한 주차구역에 그늘막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상노외주차장에는 그늘식재를 하거나 가동식 햇빛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늘식재는 5대~10대 주차구획마다 공간을 마련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 햇빛 차단막은 주차차량의 2/3정도를 가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가동식 및 내구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 그늘막이나 그늘식재는 원활한 주차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시



주차장 용어의 정의

1. 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2. 주차장의 종류

●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3. 주차장의 형태

● 자주식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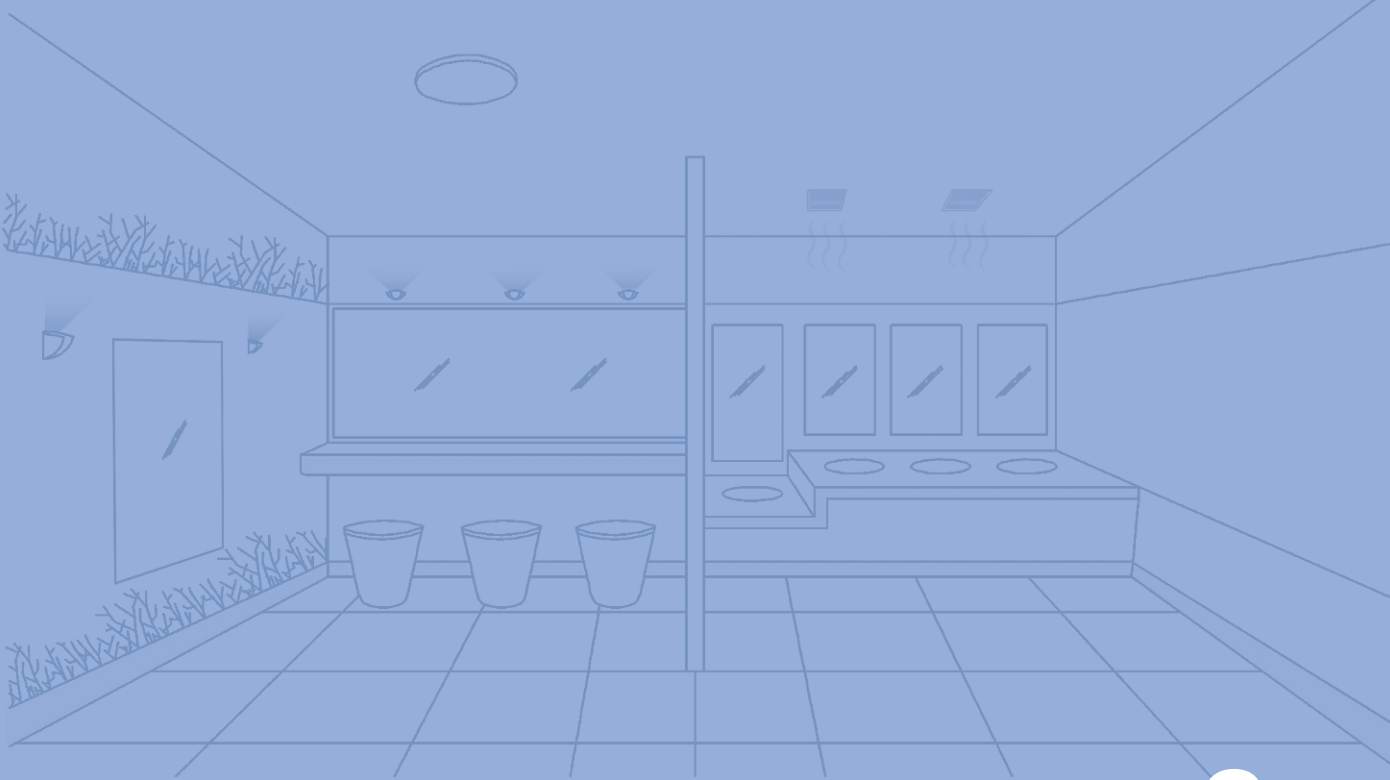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장치

4. 주차장의 구분

주차장의 종류	주차의 형태	주차장의 표시, 표식
①노상주차장 ②노외주차장 • 건물식주차장(지상, 지하) • 옥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③부설주차장 • 건물식주차장(지상, 지하) • 기계식주차장	①자주식주차장 ②기계식주차장	①수용가능 차량의 크기와 중량 ②차량 운전자에 대한 주의판 ③화기엄금 ④주차장 엔진 정지 표시 ⑤제한속도 ⑥일방통행 ⑦다른층계유도 ⑧출입구 유도 ⑨정지선 ⑩주차위치 분리선 ⑪보도, 차도 분리선



3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여행화장실 가이드라인

여행화장실 평가표

여행화장실 평가기준표

여행화장실 매뉴얼(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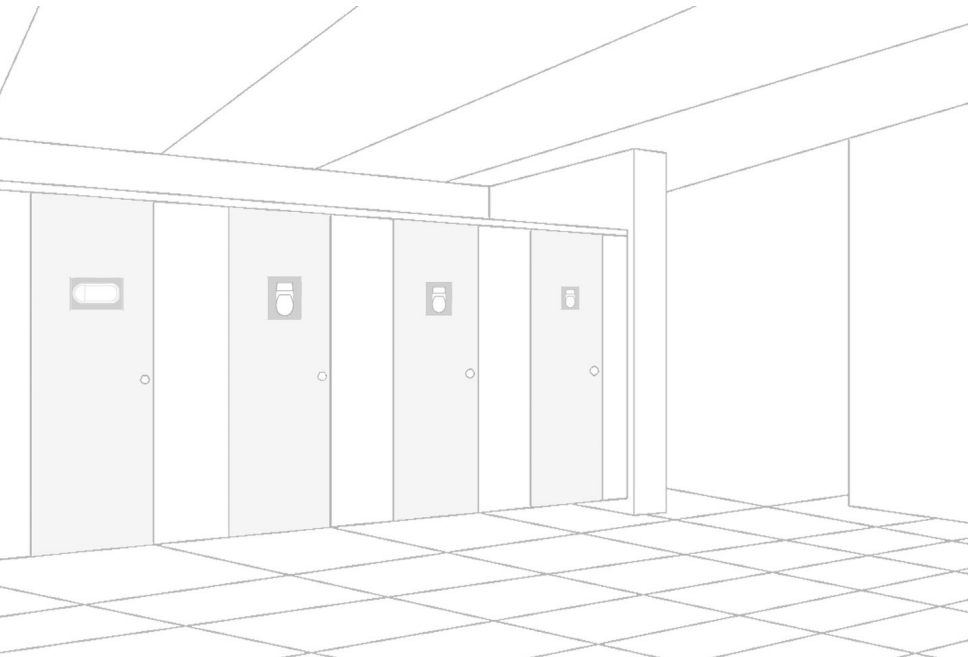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구분	가이드라인	등급
1. 편의 Convenienc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도시	1. 여성편의화장실의 양적 확보 2. 남녀화장실의 분리 설치 3. 어린이를 위한 시설 설치 4. 다목적 화장실 설치	필수/권고 선택 필수 선택
2. 배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도시	1. 여성편의화장실 공간 계획 2. 여성편의화장실 단위부스 기준 3. 서양식(입식)과 동양식(좌식)변기의 설치 4. 여성편의시설 설치	필수/권고 선택/권고 권고 필수/선택
3. 안전 Safety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도시	1. 방범 및 경보시스템 2.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3. 안전한 바닥재 사용 4. 안전한 단위부스 출입문 설치	필수/권고 필수 선택/권고 필수/선택
4. 쾌적 Amenity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도시	1. 쾌적한 환경 조성 2. 친환경 및 쾌적한 마감 계획 3.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4. 쾌적한 위생기구 설치	선택/권고 선택 권고 선택/권고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평가표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O	X	적용등급	비고(평가기준)
편의	1.1 여성편의화장실의 양적확보	여성 변기 수 확보				• 남성소대변기의 1.0 배 이상
	1.3 어린이를 위한 시설 설치	여성화장실내 어린이용 시설확보			필수	• 어린이용대소변기 • 기저귀교환대
배려	2.4 여성편의시설 설치	손 건조기 또는 종이타월 설치			필수	
		세면기 주변 선반이나 걸이, 여성용품 비치대 설치			필수	
안전	3.1 방범 및 경보시스템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필수	
	3.2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화장실의 위치별 주야간 적정 조도 확보			필수	• 실내평균조도150~200lux, 세면대, 화장대주변은 200lux이상
	3.4 안전한 단위부스 출입문 설치	부스출입문 적정 틈새			필수	• 6~8cm 범위

● 필수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X 일 때 인증불가)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평가기준)
편의	1.1 여성편의화장실의 양적확보	남성화장실의 가변 활용				권고	
	1.2 남녀화장실의 분리 설치	화장실 이용 시 프라이버시 확보				선택	남녀 화장실 입구 분리
		출입구위치의 적절성					
	1.4 다목적 화장실 설치	다목적 화장실 설치 유무(남녀 각 1개 이상)				선택	
출입문 접근의 용이성							
배려	2.1 여성편의화장실 공간 계획	여성 휴게공간의 확보(간이 화장대 공간)				선택	
		화장실 내부공간의 편의성				권고	
	2.2 여성편의화장실 단위부스 기준	단위부스 내부시설의 편의성				선택	선반, 옷걸이 에티켓벨 등 규정참고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종류 및 비데설치 인식 표시					
		단위부스 크기의 적정성				권고	1mx1.3m이상
	2.3 서양식(입식)과 동양식(좌식) 변기의 설치	서양식(입식)변기와 동양식(좌식)변기 비율의 적정성				권고	9:1 비율
2.4 여성편의시설 설치	위생시설의 설치(일회용 위생 뉘개 등)				선택	관리인 비상근사적용	
안전	3.1 방법 및 경보시스템	다목적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권고	
		화장실주변 CCTV 설치					
	3.3 안전한 바닥재 사용	바닥의 미끄럼 방지와 바닥배수 용이성				선택	
		바닥재료의 내구성과 청소 용이성				권고	
3.4 안전한 단위부스 출입문 설치	출입문 개폐방향				선택		
쾌적	4.1 쾌적한 환경 조성	충분한 환기 시스템 확보				선택	지상, 지하포함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도입				권고	지상에 위치한 화장실
	4.2 친환경 및 쾌적한 마감 계획	친환경적인 계획 및 재료 사용				선택	
	4.3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여성편의 및 배려에 따른 환경개선				권고	
		자원절감형 설비재 사용					
	4.4 쾌적한 위생기구 설치	위생기구 사용의 편리성 (조작이 쉽고 간단)				선택	
위생기구 및 주변부 청결도							
감지식 조작 위생기구 설치					권고		

● 평가표 중에 진한 글씨체 : 필요성 높은 항목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평가기준표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편의	1.1 여성편의화장실의 양적확보	남성화장실의 가변 활용	가변적극활용	형식적 활용	활용안함	선택
	1.2 남녀화장실의 분리 설치	화장실 이용 시 프라이버시 확보	동선분리	동선일부겹침	동선교차심함	선택
		출입구위치의 적절성	완전분리	근접분리	분리안됨	
	1.4 다목적 화장실 설치	다목적 화장실 설치 유무 (남녀 각 1개 이상)	편의시설모두설치	편의시설모두설치	일부설치	2개이하설치
출입문 접근의 용이성			접근용이	동선길어짐	접근불편	
배려	2.1 여성편의화장실 공간 계획	여성 휴게공간의 확보(간이 화장대 공간)	설치		설치없음	선택
		화장실 내부공간의 편의성	청소도구보관소 단위부스와 분리		청소도구보관소 단위부스내 사용	
	2.2 여성편의화장실 단위부스 기준	단위부스 내부시설의 편의성	편의시설모두설치	일부설치	설치없음	선택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종류 및 비데설치 인식 표시	모두 표시한 경우	일부표시	표시안한 경우	
		단위부스 크기의 적정성	1.1× 1.3m이상	0.9× 1.2m이상	0.9×1.2m미만	
	2.3 서양식(입식)과 동양식(좌식)변기의 설치	서양식(입식)변기와 동양식(좌식)변기 비율의 적정성	서양식:동양식9:1 비율초과	서양식:동양식 9:1비율	설치없음	권고
2.4 여성편의시설 설치	위생시설의 설치(일회용 위생 덮개 등)	설치		설치없음	선택	
안전	3.1 방범 및 경보시스템	다목적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설치		설치없음	권고
		화장실주변 CCTV 설치	설치		설치없음	
	3.3 안전한 바닥재 사용	바닥의 미끄럼 방지와 바닥배수 용이성	보행안전고려	보통	보행불편	선택
		바닥재료의 내구성과 청소 용이성	양호	보통	불량	권고
3.4 안전한 단위부스 출입문 설치	출입문 개폐방향	변기방향		변기반대방향	선택	
쾌적	4.1 쾌적한 환경 조성	충분한 환기 시스템 확보	충분	보통	불충분	선택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도입	적극적 (천창,유리블럭 등)	일반개구부정도	고려없음	권고
	4.2 친환경 및 쾌적한 마감 계획	친환경적인 계획 및 재료 사용	적극적	일반적	고려없음	선택
	4.3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여성편의 및 배려에 따른 환경개선	개선	보통	개선없음	권고
		자원절감형 설비재 사용	(초)절수용 등 절감형사용		사용없음	
	4.4 쾌적한 위생기구 설치	위생기구 사용의 편리성 (조작이 쉽고 간단)	위생기구 사용의 편리성 (조작이 쉽고 간단)	조작쉽고간단	보통	불편
위생기구 및 주변부 청결도			청결상태양호	보통	불량	
감지식 조작 위생기구 설치			2개소 이상 설치	1개소 설치	설치없음	권고

- 선택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
 ● 권고 :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장되는 사항
- 상-법규나 기준이상의 실현과 충분한 고려. 여성친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음
 중-기준만족이나 일부 고려. 여성친화적 고려가 인지됨
 하-기준미달 혹은 고려없음. 전혀 느낄 수 없음



1.1 여성편의화장실의 양적 확보

| 적용등급 필수/권고 |

도입배경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화장실의 사용 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한적한 남자 화장실에 비해 여성화장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화장실의 사용 면적과 단위부스를 늘려 보다 편리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목표

공중화장실 내에 여성 화장실의 실사용면적과 단위부스를 법적 규정 이상으로 설치하여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도록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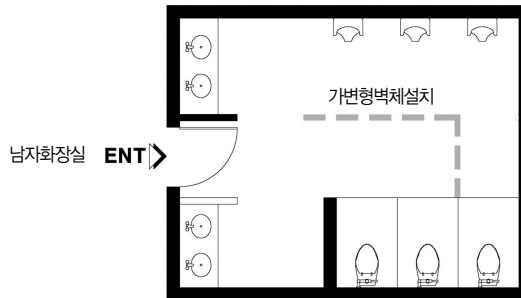
여성 변기 수 확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1항에 의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규정 이상의(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대변기 수를 모든 여성편의 화장실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 여성의 변기수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남성의 변기수와 관계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 여성화장실의 사용 면적을 남성화장실의 사용면적 이상으로 한다.

남성화장실의 가변 활용

- 행사시에는 남성화장실을 가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계획한다.
- 남성화장실을 가변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변기와 대변기부스 사이에 가변형 벽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남성용화장실을 가변으로 사용하기 위한 반영안 예시



남녀화장실의 분리설치 1.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확보 한다.

목표

남녀 화장실을 각각 분리시켜 출입구를 설치함으로써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화장실 이용 시 프라이버시 확보

- 공중화장실은 필히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연면적 1,000㎡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에도 반드시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한다.
- 화장실 이용 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위치나 방향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 공중화장실의 출입구는 화장실 내부가 시각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출입구위치의 적절성

-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은 완전 분리하여 배치한다.
- 출입문을 근접하여 배치할 경우 동선 교차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되므로 차단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도록 한다.

예시





1.3 어린이를 위한 시설 설치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어린이를 동반한 남성 또는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보다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에 각각 어린이용 변기와 세면기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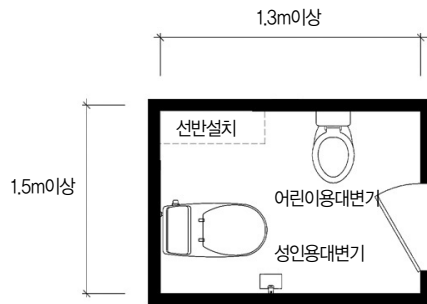
남녀 화장실 공통으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뿐 아니라 어린이를 동반한 남성들도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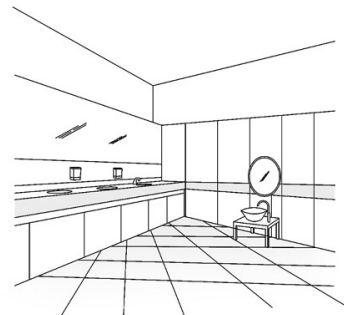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화장실내
어린이용 시설 확보

- 남녀 화장실에 각각 어린이용 대소변기를 설치한다.
- 어린이용 대변기는 별도의 부스 혹은 성인용 부스 내에 설치가 가능하며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의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치 높이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손의 직하 투입형 권장)
-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다.

예시



● 성인용부스에 어린이용대변기



● 어린이용세면기설치예시



다목적 화장실 설치 1.4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도 임산부,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노약자, 큰 짐을 갖고 있는 자, 탈의가 필요한 자 등 일반부스에서의 행위가 불편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설비를 갖춘 다목적 화장실을 계획한다.

목표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다목적의 화장실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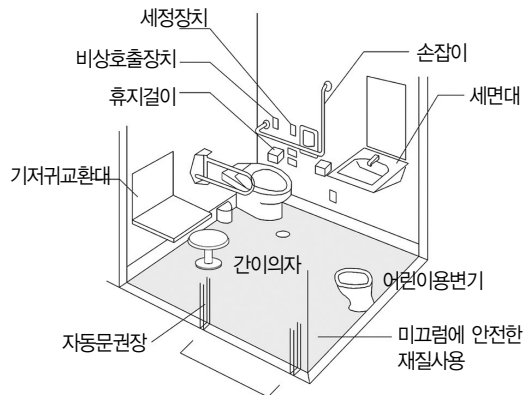
다목적 화장실 설치
유무(남녀 각 1개 이상)

- 남녀 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이를 알리는 별도의 표시를 한다.
- 내부에는 간이의자, 기저귀교환대, 성인용변기 및 어린이용변기, 간이세면기, 노약자를 위한 핸드레일과 선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출입문 접근의 용이성

-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출입구를 확보하고 사용에 편리한 형태의 문으로 설치한다.(자동문 사용 권장)
- 사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 다목적 화장실내부에는 비상호출을 위한 설비를 한다.

예시



● 다목적 화장실



● 기저귀 교환대



2.1 여성편의화장실 공간계획

| 적용등급 선택/권고 |

도입배경

화장실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행위의 확대와 다양성을 고려하여 여성편의화장실을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고 더불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변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생리, 위생 이외의 문화적인 욕구까지 충족될 수 있는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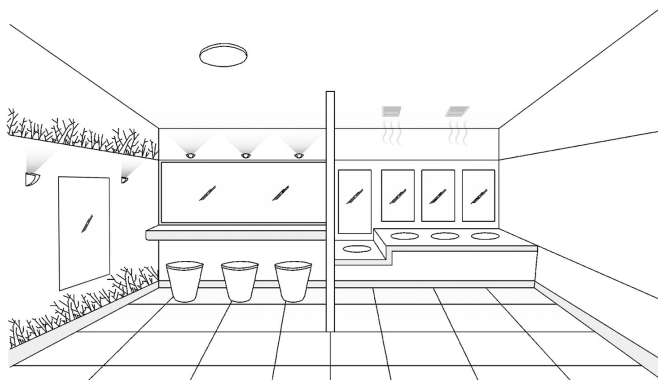
여성 휴게공간 확보
(간이 화장대 공간)

- 세면대가 있는 공간과 분리하여 별도 구획된 간이화장대를 확보한다.
- 화장실 계획 시 별도의 휴게공간을 간이화장대에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계단과 문턱은 가급적 두지 않는다.

화장실 내부공간의
편의성

- 청소도구 적재 장소는 화장실내에 단위부스로 사용되는 공간이외의 곳에 두도록 한다.
- 세면대는 단위부스 2개당 1개의 비율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세면대는 물이 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주변에 물건 등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한다.

예시



●휴게공간 확보(간이화장대 설치)



여성편의화장실 단위부스 기준 2.2

| 적용등급 선택/권고 |

도입배경

과거에는 화장실이 단순한 생리욕구를 해결하는 장소였으나 이제는 기초적인 생리욕구뿐 아니라 문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됨에 따라 단위부스에도 적절한 크기와 기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표

단위부스는 단순히 생리를 해결하려는 공간이 아니라 소지품보관과 외투걸기 등이 이루어지고, 동반한 어린자녀와 함께 위생적이고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

규정

단위부스 내부시설의 편의성

- 폭이나 천정고는 가급적 넓고 높게 하여 폐쇄감을 없앤다.
- 선반, 옷걸이, 소형거울, 에티켓벨, 핸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파이프 점검구는 단위부스 내부에 설치하지 않는다(외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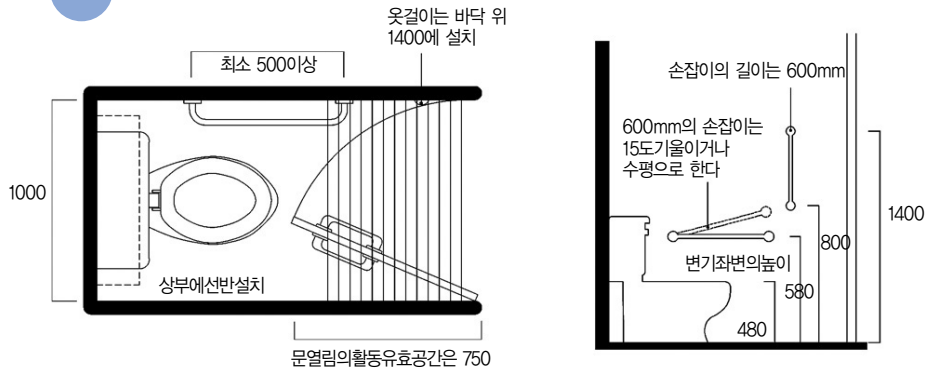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종류 및 비데설치 인식 표시

-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종류 및 비데설치 인식장치를 표시한다.

단위부스 크기의 적정성

- 일반부스의 크기는 1m× 1.3m 이상으로 여유 있게 확보한다.
- 부수중 하나는 크기 1.1m× 1.3m 이상의 핸드레일이 설치된 노유자용으로 시설하도록 권장한다.

예시





2.3 서양식(입식)과 동양식(좌식)변기의 설치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서양식(입식)변기를 선호하지 않는 사용자를 배려하여 서양식(입식)과 동양식(좌식)변기를 적절한 비율로 설치한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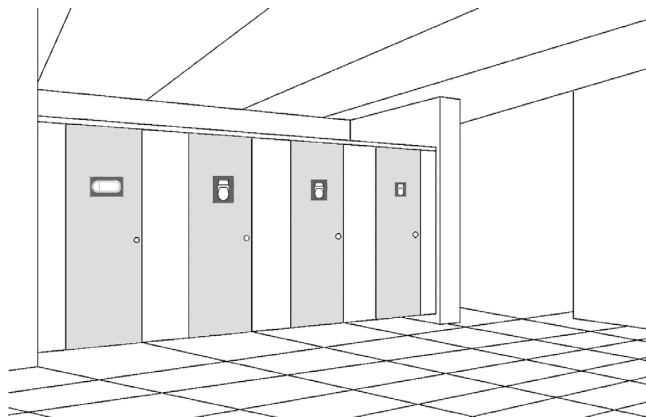
선호도나 기호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 특수한 사용목적에 따른 변기선택이 용이하도록 서양식(입식)과 동양식(좌식)의 변기를 설치한다.

규정

서양식(입식)변기와 동양식(좌식)변기 비율의 적정성

- 서양식과 동양식 변기의 비율은 9:1 비율로 설치한다.
- 문 바깥쪽에 변기종류 인식장치를 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입식, 좌식 그림 표시



여성편의시설 설치 2.4

| 적용등급 필수/선택 |

도입배경

여성화장실에는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물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목표

여성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물들을 설치하여 여성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규정

세면기 주변 선반이나
걸이, 여성용품
비치대 설치

- 세면대는 물이 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세면기 주변에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외투걸이 등을 만든다.
- 출입문 내부 전면에 거울설치를 권장한다.
- 변기 우측면에 잡지 및 신문 등을 놓을 수 있는 거치대설치를 권장한다.
- 여성 화장실내 적정위치에 생리대 및 여성전용용품의 비치대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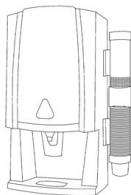
손건조기 또는
종이타올 설치

- 손건조기 설치 또는 종이타올을 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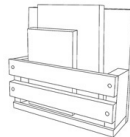
위생시설의 설치
(일회용 위생덮개 등)

- 상주관리가 곤란한 화장실은 대변기의 일회용 덮개를 비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장치를 갖추어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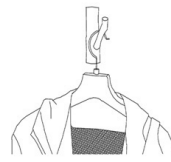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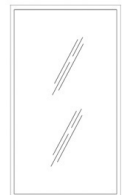
구강세정제



잡지및신문거치대



외투거치대



출입문거울설치



3.1 방법 및 경보시스템

| 적용등급 필수/권고 |

도입배경

장애인, 노약자, 여성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방법 및 경보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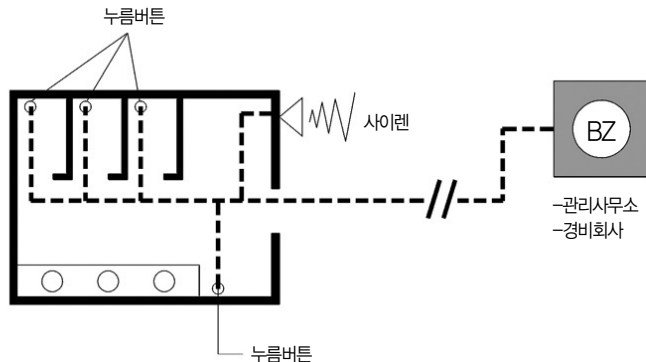
목표

항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조건으로 방법 및 경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상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데 있다.

규정

-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화장실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다목적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장애인화장실 다목적 화장실내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한다.
 - 비상시 호출 시스템을 모든 부스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 화장실주변 CCTV 설치
 - 화장실 밖 주변을 밝게 하고 CCTV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화장실내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시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3.2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화장실의 조도는 일반적으로 100~200lux 정도이나 쾌적한 분위기를 위하여 점차 밝아지는 추세이다. 기존의 공중 화장실의 경우 낮은 조도로 인해 안전상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목표

조도기준을 저녁시간과 흐린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족한 조도를 향상시키고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불빛을 유지하여야 한다.

규정

화장실의 위치별

주야간 적정 조도 확보

- 화장실 내부의 전체적인 밝기는 150~200lux를 준수하고 화장대주변은 200lux 이상을 확보한다.
- 실내 마감재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한다.
- 통로·입구, 세면기주위, 소변기주변, 대변기부스 등에 각각 적합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위치별로 조도를 확보한다.
- 주간과 야간의 조도를 별도로 유지하게 하는 창의적 조도계획을 권장한다.



3.3 안전한 바닥재 사용

| 적용등급 선택/권고 |

도입배경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바닥에 물이 고이거나 표면이 미끄러워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재의 바닥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목표

배수가 용이하며 항상 청결하고 보행에 안전한 화장실 바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규정

바닥의 미끄럼 방지와
바닥배수 용이성

- 미끄럽지 않고 보행이 안전한 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은 평평하면서도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배수를 위한 바닥설치물은 보행안전이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두도록 한다.
- 보행에 방해가 되는 설치물들이 바닥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닥재료의 내구성과
청소 용이성

- 오염에 강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자국이나 흠집이 쉽게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 재료를 사용한다.
- 파손 시 개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안전한 단위부스 출입문 설치 3.4

| 적용등급 필수/선택 |

도입배경

노약자나 여성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표

화장실 사용자의 안전과 예기치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문의 개폐방향, 잠금장치, 문의 상하부 적절한 틈새 등을 고려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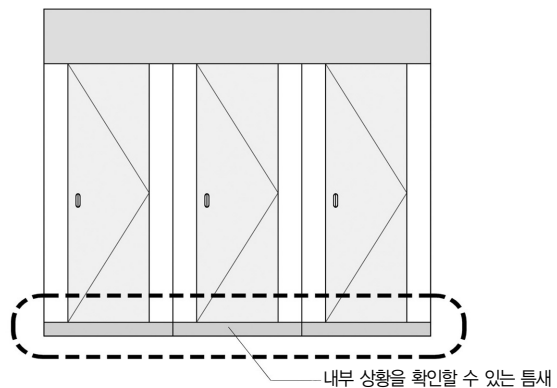
부스출입문 적정 틈새

- 일반적인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틈새를 확보한다.
- 비상시에는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틈새가 고려되어야 한다.
- 바닥에서 문의 틈새는 6~8cm범위로 한다.
- 문상부의 틈새는 환기를 고려하되 안전한 범위로 한다.

출입문 개폐방향

- 출입문의 개폐방향은 변기설치 방향으로 한다.
- 견고한 문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예시





4.1 쾌적한 환경조성

| 적용등급 선택/권고 |

도입배경

충분한 채광과 쾌적한 환기를 통하여 오래 머물러도 유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도록 한다.

목표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고 원활한 공기순환과 밝기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고자 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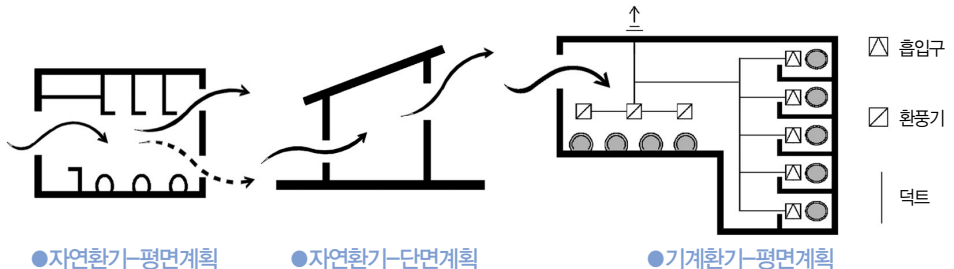
충분한 환기 시스템 확보

- 채광은 바닥면적의 1/100이상 채광창 또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채광창이 설치된 벽면의 채광유효 깊이가 유효폭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채광창 설치기준의 1.5배 이상 또는 천창설치를 권장한다.
- 지하화장실의 경우는 안전항목의 주야간 적정조도 기준을 따른다.
- 환기는 바닥면적의 1/200이상 환기창 또는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쾌적한 환기를 고려하여 환풍기를 적정하게 설치한다.
- 화장실 전체에 원활한 공기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공기의 정체공간을 제거해야 한다.
- 자연환기만으로 필요한 환기량을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강제환기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이 때 흡입구(디스트리뷰터)의 위치는 대변실 직상부 천장 또는 대변실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도입

- 유리블럭 등을 사용하여 자연채광을 적극 유도한다.
-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창문을 설치한다(천창설치 권장).
- 적절한 천정의 높이를 유지한다.

예시





친환경 및 쾌적한 마감 계획 4.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목표

여성화장실에 친환경계획과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창출하는데 있다.

규정

친환경적인 계획 및
재료 사용

- 식재나 벽면녹화 등의 친환경계획을 도입한다.
-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실내의 색채감이 조화를 이루는 마감재를 사용한다(색채계획 시).
- 청소 및 보수가 용이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활용한다.

예시



● 편안하고 쾌적한 화장실 계획



4.3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기존의 화장실은 여성 및 노약자를 고려하여 계획된 경우가 많지 않고, 비위생적이거나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편의 화장실로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표

여성 화장실의 양적확보, 단위부스 적정크기 확보, 어린이동반부스 확보, 다목적 화장실 확보 등 화장실내 위생환경의 개선과 편의시설물의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

규정

여성편의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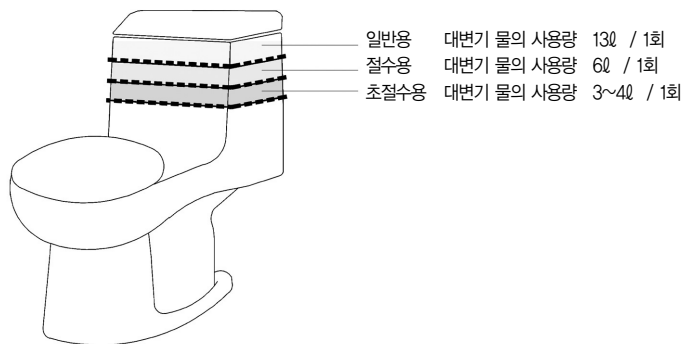
배려에 따른 환경개선

- 노후된 화장실을 여성편의화장실로 리모델링하여 여성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한다.
- 리모델링시에는 여성편의화장실 신축시 고려해야 되는 일반조건을 참고하여 시공한다.

자원절감형 설비재 사용

- 리모델링시 자원절감형 설비재로 교체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 절수용 또는 초절수용의 자원절감형 설비재로 교체시 지자체의 지원을 검토한다.

예시



●변기 물사용량 예시도



쾌적한 위생기구 설치 4.4

| 적용등급 선택/권고 |

도입배경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디자인이 아름답고 사용에도 편리한 위생기구를 선택함으로써 화장실의 분위기와 사용 호감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

목표

쾌적한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뒤통리가 미흡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악취나 불쾌감까지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위생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

규정

위생기구 사용의 편리성
(조작이 쉽고 간단)

- 위생기구는 조작이 쉽고 간단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동양식(좌식)변기의 세정용 페달을 발누름식으로 한다.
- 절수용 또는 초절수용 변기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위생기구 및 주변부 청결도

- 위생기구와 그 주변에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점검한다.

감지식 조작 위생기구 설치

- 감지식 조작 위생기구 설치를 권장한다.
- 장애,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권장한다.

관련 법규

길, 주차장, 화장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노인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1항제1호관련]

길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浜松市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条例

世田谷区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条例

주차장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규칙



Women Friendly Seoul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